

2012회계연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·세출결산승인안

의안 번호	232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13. 06. .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2012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·세출결산을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평창군의회 승인을 받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2012회계연도 세입·세출결산 총괄

(단위 : 원)

회계별	예산액	예산현액 (A)	세입결산액 (B)	B/A (%)	세출결산액 (C)	C/A (%)	차입잔액 (D)=(B)-(C)	D/A (%)
계	320,719,449,000	357,281,994,108	364,115,655,372	102	300,674,993,696	84	63,440,661,676	18
일반회계	270,293,182,000	291,398,936,798	298,556,690,955	102	255,274,210,356	88	43,282,480,599	15
특별회계	50,426,267,000	65,883,057,310	65,558,964,417	100	45,400,783,340	69	20,158,181,077	31

나. 세입결산

(단위 : 원)

회계별	예산액	예산현액 (A)	징수결정액 (B)	B/A (%)	수납액 (C)	C/A (%)	미수납액 (D)=(B)-(C)	D/A (%)
계	320,719,449,000	357,281,994,108	373,282,810,982	104	364,115,655,372	102	9,167,155,610	3
일반회계	270,293,182,000	291,398,936,798	306,594,820,415	105	298,556,690,955	102	8,038,129,460	3
특별회계	50,426,267,000	65,883,057,310	66,687,990,567	101	65,558,964,417	100	1,129,026,150	2

다. 세출결산

(단위 : 원)

회계별	예산액	예산현액 (A)	지출액 (B)	이월액		집행잔액 (D)		
				B/A (%)	C/A (%)			
계	320,719,449,000	357,281,994,108	300,674,993,696	84	41,448,217,630	12	15,158,782,782	4
일반회계	270,293,182,000	291,398,936,798	255,274,210,356	88	24,252,706,930	8	11,872,019,512	4
특별회계	50,426,267,000	65,883,057,310	45,400,783,340	69	17,195,510,700	26	3,286,763,270	5

라. 결산상 세입·세출 처리상황

(단위 : 원)

구분 회계별	계	명시이월	사고이월	계속비	보조금 집행잔액	순세계 잉여금
계	63,440,661,676	23,684,050,722	1,600,710,090	16,163,456,818	1,297,152,155	20,695,291,891
일반회계	43,282,480,599	18,514,536,472	1,216,869,020	4,521,301,438	1,275,478,030	17,754,295,639
특별회계	20,158,181,077	5,169,514,250	383,841,070	11,642,155,380	21,674,125	2,940,996,252

※ 순세계잉여금=세입결산액-세출결산액-명시이월-사고이월-계속비이월-보조금집행잔액

마. 회계별재무제표 총괄

(단위 : 원)

구분 회계별	재정상태보고서			재정운영보고서		
	자 산	부 채	순자산	비 용	수 익	운영차액
일반회계(A)	2,107,840,665,511	44,157,304,645	2,063,683,360,866	179,294,539,469	266,512,394,938	(87,217,855,469)
공기업특별회계(B)	146,583,954,395	792,020	146,583,162,375	7,278,834,733	4,619,165,205	2,659,669,528
기타특별회계(C)	226,836,050,322	811,587,804	226,024,462,518	15,196,163,198	17,020,144,305	(1,823,981,107)
기 금(D)	15,010,523,947	6,359,761,464	8,650,762,483	524,349,576	1,425,247,596	(900,898,020)
내부거래(E)	74,042,211,739	12,253,840,739	61,788,371,000	7,471,964,320	7,471,964,320	-
합 계 (A+B+C+D-E)	2,422,228,982,436	39,075,605,194	2,383,153,377,242	194,821,922,656	282,104,987,724	(87,283,065,068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“관계법령 발췌서 붙임”

- 지방자치법 제134조
-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

나. 기타사항

- 2012회계연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, 재무보고서 붙임
-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감사의견서 및 지적사항 처리계획 붙임

관계법령 발췌서

지방자치법

제134조(결산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,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7.14>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5일 이내에 시·도에서는 안전행정부장관에게, 시·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·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2.29, 2013.3.23>

③ 제1항의 감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지방재정법시행령

제59조(세입·세출결산서 등의 제출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**법 제51조**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세입·세출결산서에 「지방자치법」 **제125조제1항**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이를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세입·세출결산서에는 세입·세출결산보고서, 계속비결산보고서, 지방자치단체의 채권·채무에 관한 보고서, **법 제53조제1항**의 규정에 의한 재무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속비결산보고서는 그 계속비의 연부액의 최후의 지출이 속하는 연도의 세입·세출결산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의 작성에 관하여는 안전행정부장관이 그 기준을 정한다. <개정 2008.2.29, 2013.3.23>